

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

시행: 2024.08.20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산학협력단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며,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기관 간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·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조(사업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대외연구비 계약, 진행, 관리
2. 간접연구경비 정수 및 관리
3. 산학협력단 예·결산 편성 및 보고
4.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
5. 특허·지적재산권 관리
6. 기술이전 및 사업화
7. 부설 연구소 대외협력 지원
8.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운영
9. 중앙기기센터(서울), 공동기기원(국제) 관리·운영
10.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
11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

제2장 조 칙

제4조(조직) ① 산학협력단은 주사무소와 서울 분사무소, 의무 분사무소로 구성된다.

② 산학협력단의 사무 부서는 주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, 대학 연구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.

제5조(단장 등)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, 분사무소 단장으로서 서울 산학협력단장, 의무 산학협력단장을 둘 수 있으나, 총장의 별도 임면이 없는 한 주 사무소의 단장이 각 분사무소의 단장을 겸한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주 사무소에 부단장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임기) 산학협력단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조직) ① 산학협력단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직을 둘 수 있다.

1. 산학협력단장 직속 기구로서 사무국, 감사팀, 중앙기기센터, 공동기기원, 중앙실험동물센터를 둔다.
 2. 산학협력단 사무국 산하에 R&D기획팀, 기술혁신팀, 경영지원팀, 연구지원팀(서울), 연구지원팀(국제), 연구지원팀(의무)를 둈다.
 3. 의무산학협력단장 산하에 R&D기획팀, 기술혁신팀, 경영지원팀, 연구지원팀을 둔다.
- ② 제1항의 조직에는 산학연협력업무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을 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,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 단장이 되며,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전문가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③ 산학협력단장은 운영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소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학협력단 단장, 산학협력단 부단장, 산학협력단 사무국장, 분사무소 단장, 대학 기획조정처장, 대학 인사처장, 대학 재무처장으로 하며,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
② 임명직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단 단장이 임명한다.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단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10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단의 기본운영방침과 사업계획
2. 산학협력단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3. 산학협력단정관 및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·폐에 관한 사항
4. 산학협력단의 해산 및 청산 절차에 관한 사항
5.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
6.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1조(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산학협력단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장 분사무소운영위원회

제12조(분사무소운영위원회) ① 분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사무소운영위원회를 두고,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되며,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전문가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13조(구성) ① 분사무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학협력단 단장, 산학협력단 부단장, 산학협력단 사무국장, 분사무소 단장으로 하며,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
② 임명직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분사무소 단장의 추천에 의해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 분사무소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분사무소 단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14조(심의사항) 분사무소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분사무소의 기본운영방침과 사업계획
2. 분사무소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5조(소집 및 의결) ① 분사무소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분사무소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산학협력단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장 보 칙

제16조(인사 및 회계) 산학협력단의 인사 및 회계는 대학(부속병원 포함)의 인사 및 회계와 독립하여 운영한다. 산학협력단의 인사 및 회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.

제17조(준용) 산학협력단장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